

도곡삼호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고시

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540번지 도곡삼호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처리하고,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1월 2일

강 남 구 청 장

- 1. 정비사업의 명칭 및 종류 : 도곡삼호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
- 2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540번지 외 1필지
- 3. 정비구역의 면적 : 10,484.2㎡
- 4. 사업시행자의 성명 : 도곡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정우석
- 5. 사업시행자의 주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378길 34-4, 2층(도곡동)
- 6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
- 7. 사업시행인가일 : 2020. 9. 16. 7-1. 사업시행(변경)인가일 : 2025. 12. 30.
- 8.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

대지면적(㎡)	건폐율(%)	용적률(%)	연면적(㎡)	최고높이(m)	건축물의 주된 용도	층수
10,484.2	26.66	293.3	49,869.50	51.3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	지하3층 ~ 지상18층

8-1. 건축계획의 관한 변경사항

(1) 주민공동시설 변경

내 용	변 경 전	변 경 후	비고
연면적	49,771.34㎡	49,869.50㎡ (+98.16㎡)	
작은도서관	284.21㎡	191.13㎡ (-93.08㎡)	
주민공동시설	51.60㎡	256.18㎡ (+204.58㎡)	피트니스 시설
지하주차장	16,972.01㎡	16,958.67㎡ (-13.34㎡)	401대 → 403대

9.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(변동없음)

공급구분	주택의 형태	동수	세대수	주택규모별 세대수(전용면적기준)		
				60㎡이하	60~85㎡미만	85㎡이상
계		4	308	172	85	51
분양	아파트	4	260	124	85	51
임대			48	48		

10.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(기부채납)에 관한사항 (변동없음)

종 류	규 모(㎡)	시 행 자	비 고
도 로	16 ㎡	도곡삼호아파트 재건축사업조합	

11. 의제사항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7조 규정에 의한 의제사항

- 「주택법」제15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등
- 「건축법」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등

※ 기타 의제 사항 표기 생략

12. 기타 인가조건 및 관계서류는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(☎02-3423-6114)에 비치 보관